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43

발의연월일: 2025. 2. 27.

발 의 자:최은석・이인선・신성범

송언석 • 이종욱 • 고동진

서일준 · 서지영 · 박충권

성일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료제출 규정을 두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감면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해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시정 명령을 어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명세"를 각각 "명세 및 증빙자료"로 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중 "제75조제2항"을 "제75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자료제출) ① (생 략)	제75조(자료제출) ① (현행과 같
<u><신 설></u>	음) ②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 할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 우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
	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료를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
	<u>여야 한다.</u>
②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	<u>③</u>
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은 <u>제1항</u> 에 따라 관련	<u>제1항 및 제2항</u>
<u>명세</u> 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u>명세 및 증빙자료</u>
관련 <u>명세</u> 를 제출하지 아니하	<u>명</u>
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	<u>세 및 증빙자료</u>
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제76조(과태료) ① 국세청장, 납	제76조(과태료) ①

세	지	관	할 🤇	지방	국서	청정	}-	또:	는
납	세지] :	관할	세	무서	장은	<u>)</u>	다	<u> </u>
각	ই	의	어느	- हें	나나여	하	당	하	는
자	에게] 2	2천민	l 원	ोठं	l 의	과	태.	豆
를	· 부.	과	한다.						

- 1. (생 략)
- 2. <u>제75조제2항</u>에 따른 시정 명 령을 위반한 자
- ②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제75조제3항</u>
② (현행과 같음)